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의 보정기간 등에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나 고안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나 고안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과 「실용신안법」(법률 제13088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완수수료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1만8천원, 서면으로 하는 경우 2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출원납용을 방지하지 위하여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개인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이 각각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감면율을 30퍼센트로 하며,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5. 15. ~ 6.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특허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주장 보완료

가.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1만8천원

나.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2만원

제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 주장 보완료

가.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1만8천원

나.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2만원

제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제1항제7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8만9천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며”를 “제외한다.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7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하여 제1항에”를 “출원하여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을 한 자,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권리설정등록시”를 “권리설정등록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u><신설></u> 7. ~ 15. (생략) ② (생략) ③ 「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거절결정불복심판 · 정정심판 · 정정무효심판 청구료</u>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특허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주장 보완료</u> <u>가.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1만8천원</u> <u>나.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2만원</u> 7.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u>거절결정불복심판 · 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가.·나. (생략)

2. ~ 12. (생략)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6. ~ 13. (생략)

② (생략)

③ 「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가.·나. (현행과 같음)

2.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 주장보완료

가.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1만8천원

나.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완마다 2만원

6.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거절결정불복심판·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

가.·나. (생략) 2. ~ 12. (생략)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보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 마. (생략) 바.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른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만원 <u><단서 신설></u> 8. ~ 13. (생략) ② (생략)	<u>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가.·나. (현행과 같음) 2. ~ 12. (현행과 같음)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 <u>다만, 디자인일부 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8만9천원으로 한다.</u> 8.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③ 「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나. (생략)

2. ~ 11. (생략)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② (생략)

③ 「상표법」 제3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나. (생략)

2. ~ 11. (생략)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명자·고안

③ -----

-----.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2. ~ 11. (현행과 같음)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2. ~ 11. (현행과 같음)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

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 제외한다.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 7. (현행과 같음)

② -----

-----.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 <단서 신설>

3. ~ 7. (생략)

8. 개인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지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 ~ 7. (현행과 같음)

8. -----

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85 <단서 신설>

9. (생략)

③·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
여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제2
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
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
두 해당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1항에 따
른 면제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
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
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
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
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
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
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
의 30으로 한다.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출원하
여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
호(「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
제1호 및 이 규칙 제1항에 ----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버린다.

1. · 2.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면제 또는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2항제1

-----.

-----.

1. · 2. (현행과 같음)

3.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

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특

허출원을 한 자, 「실용신안

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실용

신안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

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⑥ -----

----- 권리설

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

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

-----.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⑦·⑧ (생략)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	--